

제335회 임시회  
2014. 10. 22.(수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 출 자 : 장선배 의원 외 6명

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4년 10월 2일
- 회부일자 : 2014년 10월 8일

## 3. 제정이유

- 빈곤 취약계층(수급자, 노인, 장애인 등)이 70%이상 거주하고 있는 충북 소재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슬럼화(slumism)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.
  - ※ 충북 영구임대주택 세대수(총 6,139세대) : 청주 3,125세대(용암 1,140, 산남 1,985), 충주 1,582세대, 제천 1,074세대, 증평 358세대
-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협의체계 구성 및 필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고, 나아가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 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것임.

## 4. 주요내용

- 가.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5년 단위 수립(안 제5조)
- 나.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및 자활 촉진 사업 지원(안 제7조)
- 다. 입주자 건강, 자살예방 등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지원(안 제8조)
- 라. 입주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한 학습, 결연 등 사업 지원(안 제9조)
- 마.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원(안 제10조)
- 바.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주체와의 협력(안 제11조)
- 사.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관련 기관 및 단체 위탁 규정(안 제12조)
- 아. 영구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구성 등(안 제13조~제21조)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장선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, 충청북도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입주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임.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」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것으로 적법하다 하겠으며,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단지의 슬럼화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필요, 타당한 조례로 사료됨. 타 지역의 경우, 광주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.
- 본 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주거복지 측면에서 볼 때, 입주하지 못한 대다수 빈곤취약계층들에 비해 나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관점에서, 이중 수혜 및 주거복지 형평성 문제의 논란 여지가 있는 ‘임대료 및 관리비 등’ 주거관련 실비 지원 조항은 배제하고,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, 건강지원,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입주자들의 역량 제고 및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유인하고자 하였음.

※ 충청북도 빈곤취약계층(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) : 28,553세대('12)

- 본 조례안은 총 3장, 2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  - 안 제5조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 차원의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, 시장·군수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명시하였음.
  - 안 제7조는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 촉진을 위해 경제상담 및

공동작업장 운영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- 안 제8조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살률을 줄이고, 근로역량을 강화하고자 정신 및 신체적 건강을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고,
- 안 제9조는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해 돌봄서비스, 학습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10조는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‘임차인대표자 회의’ 구성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무와 도지사의 주민자치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음.
- 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공무원, 사업주체, 입주자대표,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‘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위원회’를 구성,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22조는 영구임대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시·군별로 지역협의회를 구성,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음.

-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, 유관기관장, 민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및 충청북도 담당부서(노인장애인과)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성안된 바, 내용 및 법리적으로 타당함.